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1201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충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서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채윤주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신수

변론 종결2024. 10. 23.

판결 선고2024. 10. 3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827,352원 및 그중 42,159,222원에 대하여 2024. 1. 3.부터 2024. 3. 28.까지는 연 7%,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3. 2.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23. 5.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3. 2. 9. 접수 제67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3. 5. 17. 접수 제27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및 피고 A 간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채권 발생

1) 원고는 2018. 12. 11.부터 2021. 3. 23.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는 피고의 상환 범위에 관하여,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보증채무이행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4.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5.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대출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018. 12. 11.	25,500,000원	2023. 12. 4.	C은행 D금융센터	30,000,000원	85%
2	2020. 5. 18.	20,000,000원	2025. 5. 13.	C은행 D금융센터	20,000,000원	100%
3	2021. 3. 23.	30,000,000원	2023. 3. 22.	E은행 F지점	30,000,000원	100%
합계			80,000,000원			

2) 피고 A이 2023. 6. 20. 위 대출금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24. 1.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2,159,22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가지급금, 추가보증료 1,668,130원을 포함하여 합계 43,827,352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손해금률은 연 7%이다. 원고의 각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변제금, 기타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 또는 '이 사건 구상채무'라 한다)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1	2024. 1. 3.	3,865,606원	가(대)지급금 1,457,500원, 추가보증료 175,790원
2	2024. 1. 3.	10,334,409원	추가보증료 34,840원
3	2024. 1. 3.	27,959,207원	해당 없음
합계	42,159,222원	1,668,130원	

나. 피고들 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등

피고 A은 피고 B에게, 2023. 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2023. 2.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23.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아래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 상태였다.

- 1)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69,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구상채무 43,827,352원, G조합에 대한 채무 40,000,000원, H에 대한 채무 17,031,000원, K에 대한 채무 21,099,000원, I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000,000원, 피고 B에 대한 채무 55,000,000원 등 합계 181,957,352원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구상채무 43,827,352원, G조합에 대한 채무 40,000,000원, J에 대한 채무 10,339,000원, H에 대한 채무 14,571,000원, K에 대한 채무 20,295,000원, I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000,000원, 피고 B에 대한 채무 55,000,000원 등 합계 189,032,352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와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청 세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43,827,352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42,159,22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4. 1.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4. 3.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7%,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채권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 이후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때 성립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상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8. 12. 11.부터 2021. 3. 23. 사이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점, 피고 A의 대출금 원금 연체에 의한 신용보증사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시점으로부터 각각 불과 약 1개월, 4개월 이후인 2023. 6. 20. 발생한 점, 이후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원고의 이 사건 구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기간 내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B은 이를 다투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 A의 신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2022. 12. 29. 이후인 2023. 2. 9. 추가 자금의 융통 없이 기존 채무인 위 대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항변을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 B이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고, 피고 A과 친인척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평소 자신이 운영하던 'L' 식당의 전기공사를 피고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에게 전적으로 맡겨왔다는 것인 점(을 제2호증, 피고의 2024. 9. 24. 자 준비서면 제1면 참조)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한 대여 이후 비로소 이 사건 각 등기를 순차로 마친 점, 이 사건 각 계약 당일 곧바로 이 사건 각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B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강진명

별지